

의 안 번 호	제 호	의 결 사 항
의 결 연 월 일	2021. . . (제 회)	

중 소 기 업 기 술 혁 신 촉 진 법 시 행 령
일 부 개 정 령 안

제 출 자	국무위원 ○○○ (중소벤처기업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21. . .

법 제 처 심 사 전

1. 의결주문

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 지원사업(이하 “기술혁신 촉진 지원사업”)의 투자효율성 제고 및 성과의 활용 촉진을 위하여 기술혁신 촉진 지원사업에 대한 평가를 도입 하는 등 「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」이 개정(법률 제17627호, 2020. 12. 8. 공포, 2021. 6. 9. 시행)됨에 따라 기술혁신 촉진 지원사업에 대한 평가의 지표, 대상 및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, 중소기업 기술진흥 전문기관(이하 “기술진흥 전문기관”)의 출연금 관리 방법을 명시하는 등 법령을 정비하려는 것임.

3. 주요내용

가. 기술혁신 촉진 지원사업 평가 관련 규정(안 제8조의2 신설)

- ① (평가 지표) 기술혁신 촉진 지원사업 평가 지표를 기술혁신 촉진 지원사업 과제를 통한 지원기업의 경제적 성과와 기술적 성과 등으로 정함
- ② (평가 대상) 법률 제9조 제1항의 1호, 3호, 9호에 해당하는 기술혁신 촉진 지원사업 및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으로 정함
- ③ (평가 절차) 기술진흥 전문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기술혁신 촉진 지원사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출토록 함

- ④ (기타 사항) 그 외에 기술혁신 촉진 지원사업의 평가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토록 함

나. 기술진흥 전문기관의 출연금 관리 방법 규정(안 제5조제5항 신설)

정부 출연금의 투명한 관리를 위해서 기술진흥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은 자는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출연금을 관리토록 함

다. 시행기관의 중소기업 기술혁신 지원실적 및 계획 통보기한 폐지(현행 제11조제8항 삭제)

「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」 개정(2015.8)*으로 시행기관의 중소기업 기술혁신 지원실적 및 계획 통보기한을 “매년 2월말일”까지로 직접 규정 (법률 제13조제4항)

* 개정 이전 법률에서는 통보기한을 시행령에 위임

- 시행령의 기존 통보기한 규정(영 제11조제8항)을 삭제함

* 제11조 제8항 : 법 제13조제4항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”이란 1월 31일을 말한다..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⑤ 기술진흥전문기관은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출연금을 관리하여야 한다.

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8조의2(기술혁신 촉진 지원사업의 평가 지표 등) ① 법 제10조의2에 따른 기술혁신 촉진지원 사업에 대한 평가 지표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기술혁신 촉진 지원사업 과제를 통한 지원기업의 경제적 성과
2. 기술혁신 촉진 지원사업 과제를 통한 지원기업의 기술적 성과
3. 그 밖에 기술혁신 촉진 지원사업의 성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

② 법 제10조의2에 따른 평가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법 제9조제1항의 제1호, 제3호, 제9호에 해당하는 기술혁신 촉진 지원사업
2.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술혁신 촉진 지원사업

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기술혁신 촉진 지원사업에 대한 평가를 법 제7조에 따른 기술진흥전문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.

④ 제3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부터 기술혁신 촉진 지원사업에

대한 평가를 위탁받은 기술진흥전문기관의 장은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술혁신 촉진 지원사업의 평가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.

제11조제8항을 삭제하고, 같은 조 제9항을 제8항으로 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5조(기술진흥전문기관의 지정 등) ① ~ ④ (생략) <u><신설></u>	제5조(기술진흥전문기관의 지정 등) ① ~ ④ (현행과 같음) <u>⑤ 기술진흥전문기관은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출연금을 관리하여야 한다.</u>
<u><신설></u>	제8조의2(기술혁신 촉진 지원사업의 평가 지표 등) ① 법 제10조의2에 따른 기술혁신 촉진지원사업에 대한 평가 지표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1. <u>기술혁신 촉진 지원사업 과제를 통한 지원기업의 경제적 성과</u> 2. <u>기술혁신 촉진 지원사업 과제를 통한 지원기업의 기술적 성과</u> 3. <u>그 밖에 기술혁신 촉진 지원사업의 성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</u> ② 법 제10조의2에 따른 평가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1. 법 제9조제1항의 제1호, 제3

제11조(기술혁신 지원계획의 수립 · 시행 등) ① ~ ⑦ (생략) ⑧ 법 제13조제4항에서 “대통령	<u>호, 제9호에 해당하는 기술혁신 신 촉진 지원사업</u> 2. 그 밖에 <u>중소벤처기업부장관</u> <u>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술</u> <u>혁신 촉진 지원사업</u> ③ <u>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기술</u> <u>혁신 촉진 지원사업에 대한 평</u> <u>가를 법 제7조에 따른 기술진흥</u> <u>전문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</u> <u>있다.</u> ④ <u>제3항에 따라 중소기업</u> <u>부장관으로부터 기술혁신 촉진</u> <u>지원사업에 대한 평가를 위탁받</u> <u>은 기술진흥전문기관의 장은 평</u> <u>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중소</u> <u>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</u> <u>야 한다.</u> ⑤ <u>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</u> <u>정한 사항 외에 기술혁신 촉진</u> <u>지원사업의 평가에 필요한 세부</u> <u>사항은 중소기업부장관이</u> <u>정하여 고시한다.</u> 제11조(기술혁신 지원계획의 수립 · 시행 등) ① ~ ⑦ (현행과 같 음) <삭 제>
--	--

령으로 정하는 기한”이란 1월 3
1일을 말한다.

⑨ (생 략)

⑧ (현행 제9항과 같음)

〈 의안 소관 부서명 〉

중소벤처기업부 기술정책과	
연 락 처	(042) 481 - 4432